

해외근로자재해공제약관

< 목 차 >

■ 해외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	3
■ 해외근로자재해공제 특별약관	
1.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17
2.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	18
3.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19
4.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	20
5.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지치료비 및 현지휴업보상금 부담보 추가특별약관(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21
6.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22
7. 피재자과실담보 추가특별약관	24
8. 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	25
9. 공제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6
10. 적용환율 특별약관	27
11.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28
12.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29

해외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사이에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공제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 : 조합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조합이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공제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조합이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조합이 공제금의 지급 또는 공제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공제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조합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조합은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조합은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제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공제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3.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 피공제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

에 생긴 손해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7.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위 이외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각의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조합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조합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및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 (공제금의 지급절차)

- ① 조합은 제6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조합은 제1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재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조합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써 공제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공제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공제금(보험금)의 합계액이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재해보상액을 초과할 때에는 조합은 아래와 같이 지급 공제금을 계산합니다.

$\text{제3조에 따른 재해보상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공제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금(보험금)의 합계액}}$
--

- ②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조합의 위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재해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조합은 위 제2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조합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이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조합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조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조함이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조함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대위권)

- ① 조함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함이 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조함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함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함이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조함은 위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조함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

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공제증권 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위 1, 2 및 3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조합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조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이하 '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조합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

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조합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와 효력상실)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 또는 효력상실로 합니다.

-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② 공제증권에 기재된 사업이 공제기간 중에 폐지되거나 양도 또는 합병된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양도 또는 합병된 경우 계약자가 공제

증권상에 피공제자의 변경에 대하여 배서로서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
 2.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계약자, 피공제자
 4.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조합은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사업장 등의 조사열람)

조합은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사업장과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와 효력 상실)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이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때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

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

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조합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직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조합은 다른 공제 및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공제료의 정산)

- ① 공제료는 피공제자가 자기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및 총근로자수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공제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총액계산서 및 동 기간의 총근로자수를 1개월 이내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기초로 하여 확정공제료를 산출한 후 이미 납입된 공제료(이하 “예치공제료”라 합니다)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2.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공제기간 개시일부터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임금총액계산서 및 총근로자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기초로 하여 확정공제료를 산출한 후 예치공제료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3.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그 밖의 명칭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피공제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경우, 공제계약 체결시 도급(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또는 도급금액에 적정 인건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공제료를 확정공제료로 합니다.

제33조(조합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조합이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

는 경우에 조합은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1. 무효의 경우 : 조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2.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 경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공제료.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1.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정된 연간공제료에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2. 건설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경우에는 경과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로 계산된 공제료를 뺀 잔액의 90% 해당액
- ③ 위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제기간 일수에 대한 경과된 공제기간의 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 ④ 제2항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조합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⑤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조합이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합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합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9조(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0조(조합의 손해배상책임)

- ① 조합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상담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조합은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조합이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 ① 조합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

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은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해외근로자재해공제 특별약관

1.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이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 ①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내지 제80조(장해보상)와 동 제82조(유족보상) 내지 제84조(일시보상)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2. 위 1호의 사업장 내에서의 간이치료비용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 ③ 조합은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요양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의 이송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송환비용 또는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의 이송비용은 적절한 운송용구에 의한 편도에 한하여 실비로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요양보상의 특례)

조합은 위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지한 월임금총액(이하 “공제가입임금”이라 합니다)이 ()를 넘을 때에는 위 제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 전액
2. 공제가입임금이 ()를 미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요양보상액에 대하여 ()에 대한 공제가입임금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조(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 ① 계약을 맺을 때에 피공제자의 사업이 정부가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합니다)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② 피공제자의 사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조합은 이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한 해외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휴업보상 : 휴업일수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장해보상

등 급	재 해 보 상	등 급	재 해 보 상
1 급	1,474 일분	8 급	495 일분
2 급	1,309 일분	9 급	385 일분
3 급	1,155 일분	10 급	297 일분
4 급	1,012 일분	11 급	220 일분
5 급	869 일분	12 급	154 일분
6 급	737 일분	13 급	99 일분
7 급	616 일분	14 급	55 일분

3.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300일분
 4. 장 사 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5. 일시보상 : 평균임금의 1,474일분 다만, 일시보상금을 피공제자가 분할하여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매년 정기에금이율을 반영한 금액을 분할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에 정하지 않은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중독, 마취, 만취 등으로 생긴 손해
2. 과격한 운동이나 위험한 오락(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자동차 경주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자해, 자살, 자살미수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4.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아래와 같이 분류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병명	분류기호
1. 악성 신생물	C00~C95, D00~09
2. 당뇨병	E10~E14
3. 만성 류마티스성 심질환	I05~I09
4. 고혈압성 질환	I10~I15
5. 허혈성 심질환	I20~I25
6. 기타형의 심질환	I30~I52
7. 뇌혈관 질환	I60~I69

5. 매독, 임질, AIDS, 기타 이와 유사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6. 시력감퇴 등 생리적 노화 또는 약화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7. 치아에 관련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8. 군인이 아닌자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중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 (쿠웨이트 근로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상의 재해보상 및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국내치료비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지치료비 및 현지휴업보상금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장법 중 직업재해보상부분의 제 규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국을 통하여 부담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현지 치료비 및 동 기간의 현지 휴업보상금을 제외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조합이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②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손해의 범위)

- ①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조합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3.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제2항, 제3항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②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한 조합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제1항의 1호의 손해 : 1사고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위 제1항의 2호 및 3호의 비용 : 피공제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매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한 위 제1항의 1호의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제1항의 2호 및 3호의 비용은 위 제1항의 1호의 금액에 대한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피공제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보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② 보통약관 또는 재해보상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공제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④ 피공제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⑥ 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의 경우 공제가입임금이 실임금에 미달함으로써 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액이 재해보상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
- ⑦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⑧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재해의 통지 및 이행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재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조합에 알리고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 2.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는 일
 -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위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아래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위 제1항의 1호의 경우 :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로서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
 - 2. 위 제1항의 2호의 경우 :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 3. 위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경우 : 소송비용과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피해자과실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사망사고에 한하여 피해자의 총 손해액 중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한도)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본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공제금의 합계액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적용규정)

보통약관 제9조(공제금의 부담) 및 제13조(대위권)는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피해자의 본인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공제금의 부담)의 경우, 동 추가특약과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는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특약에서 담보하는 피해자의 본인 과실 부분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피해자의 총손해액	피해자의 총손해액이라 함은 법률상의 손해배상 범위로 제한되며,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고 산출된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액을 말합니다.
--------------	---

8. 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이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2조(간병보상)의 재해보상으로 인한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간병보상)

- ① 조합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간병보상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고, 다른 부위에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서의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수시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상시간병보상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 간병보상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않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보상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9. 공제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공제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공제료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회에 나누어 조합에 냅니다.

제2조(나뉘내는 공제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뉘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뉘 내는 공제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공제료의 60%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공제료의 40%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공제료의 35%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2개월이 경과되는 날(총공제료의 25%해당액)

제3회: 청약일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공제료의 20%해당액)

제4회: 청약일후 8개월이 경과되는 날(총공제료의 20%해당액)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항의 제1회 나뉘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미납입공제료 공제)

조합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적용기준)

조합은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공제료 :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공제료 : 배서일
3. 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4. 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제2조(공제금 지급기준)

공제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1조

조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

조합은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조합은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 1, 2, 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2.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13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